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·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2. 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2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가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 - 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연번	기 정					변 경 (안)				
	가구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비 고	가구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			위치	면적(㎡)	
1	6	6,552.8	4	158.2		6	6,552.8	4	289.6	
			5	131.4						

※ 서구 공촌동 305-3, -4번지 획지합병

-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6	4, 5→ 4	획지합병	소규모 토지 합병으로 건축규모 확장(신축)


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마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3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나. 의견제출 :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: 열람 장소에 비치

4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☎560-4763)

